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 안 번 호 5886 제출연월일: 2024. 11. 26.

제 출 자:정 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통적인 간행물과는 생산 및 유통구조에 차이가 있는 웹소설과 웹툰의 특성을 고려하여 특정한 콘텐츠 식별체계를 표시한 웹소설과 웹툰을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여 가격할인을 비롯한 다양한 판매촉진 활동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에 대한 혜택을 늘리고 웹소설・웹툰 산업을 활성화하는 한편, 웹소설과 웹툰을 판매하는 자가 판매 촉진에 소요되는 비용 또는 가격할인에 따른 비용 등을 부당하게 저자 또는 출판사에 부담시키는 행위를 금지하여 웹소설・웹툰 산업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7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3조에 따른 콘텐츠 식별체계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식별체계를 표시한 다음 각 목의 간행물
 - 가. 웹소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유통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에서 제작된 소설로서종이에 실린 소설을 전자적 매체에 실어 이용자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읽거나 보거나 들을 수 있게발행한 전자책 등의 간행물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나.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2에 따른 웹툰(이하 "웹

제23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툰"이라 한다)

2의2.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웹소설 또는 웹툰을 판매하는 자가 판매촉진에 소요되는 비용 또는 가격할인에 따른 비용 등을 부당하게 계약 상대방인 저자 또는 출판사에 부담시키는 행위 제23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웹소설 또는 웹툰을 판매하는 자가 제1항제2호의2의 금지행위를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 정거래위원회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⑥ 공정거래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요청을 받으면 그 내용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6개월 이내에 그 검토 및 조치결과를 문화체육 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행 개 정 안 혂 제22조(간행물 정가 표시 및 판 제22조(간행물 정가 표시 및 판 매) ① ~ ⑥ (현행과 같음) 매) ① ~ ⑥ (생 략)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행물에 대하여는 제 4항 및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 하다. 1. 삭 제 2. · 3. (생략) 2. · 3. (현행과 같음) 4.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3 <신 설> 조에 따른 콘텐츠 식별체계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별 체계를 표시한 다음 각 목의 간행물 가. 웹소설[「정보통신망 이 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 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 하 "정보통신망"이라 한 다)을 통하여 유통하기 위 하여 정보통신망에서 제작 된 소설로서 종이에 실린 소설을 전자적 매체에 실 어 이용자가 컴퓨터 등 정 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그

5. (생략)

⑧ (생략)

제23조(간행물의 유통질서) ① 간 제23조(간행물의 유통질서) ① --행물의 유통질서를 유지하기 위 하여 간행물의 저자, 출판 및 유 통에 관련된 자로서 다음 각 호 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2. (생략)

<신 설>

3. (생략)

② ~ ④ (생 략)

내용을 읽거나 보거나 들 을 수 있게 발행한 전자책 등의 간행물을 제외한 것 을 말한다. 이하 같다] 나. 「만화진흥에 관한 법 률」 제2조제5호의2에 따 른 웹툰(이하 "웹툰"이라 한다)

- 5. (현행과 같음)
- ⑧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2의2.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웹 소설 또는 웹툰을 판매하는 자가 판매 촉진에 소요되는 비용 또는 가격할인에 따른 비용 등을 부당하게 계약 상 대방인 저자 또는 출판사에 부담시키는 행위

- 3. (현행과 같음)
-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u><신</u>설>

-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보 통신망을 통하여 웹소설 또는 웹툰을 판매하는 자가 제1항제2 호의2의 금지행위를 한다고 인 정할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⑥ 공정거래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요청을 받으면 그 내용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6 개월 이내에 그 검토 및 조치결 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